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232 |
|----------|-----|

2011년 2월 2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2011년 2월 15일
- 다. 상정일자: 2011년 2월 23일 , 수정가결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공보담당관 조신)

가. 제안이유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교육정책 홍보 등의 행사에 참여할 때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유도와 열린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열린교육감실 나도교육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참여 행사 운영과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교육정책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부여된 누적된 점수를 근거로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정책고객에게 교육정책 및 다양한 교육정보를 메일서비스로 제공하여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성용)

가. 총괄 의견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고객 충성도(Loyalty,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지를 가지는 상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마일리지 제도는 IT 등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반시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임.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운영, 정보 및 게시물 관리, 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 운영, 이용자 참여행사 및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정책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문조사 등 그 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하여 왔던 제도의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할 것임.
- 다만, 교육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홈페이지까지 모두 관리하게 한 점은 교육감에게 업무를 집중시킴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장의 권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세부 내용

1) 홈페이지의 정의에 대하여(안 제2조)

- 안 제2조제2호에는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에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서 지칭하는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홈페이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안 제3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교육감이 지역교육청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 제3조 홈페이지 운영 주체, 안 제4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주체, 안 제5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주체, 안 제6조 열린교육감실 나도교육감 운영 주체, 안 제7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주체, 안 제8조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주체, 안 제9조 정책 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문조사 주체를 모두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11개 지역교육청 및 29개 직속기관의 홈페이지도 직접 관리해야 함.

- 그러나 교육감이 안 제4조제3항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안 제6조 열린교육감실 나도교육감 창구를 운영하는 것, 안 제9조 PCRМ(정책고객관계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수신 동의한 정책고객에게 정책 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등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 교육감이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안 제3조) 홈페이지 정보(안 제4조) 및 게시물(안 제5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의 참가자에게 상품권(안 제7조) 및 마일리지(안 제8조)를 제공하는 것까지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조례안 제3조제1항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역교육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라 수정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 제2항,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의 “교육감”을 “기관장”이라 수정하여 교육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역교육청교육장,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하여 기관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홈페이지의 운영에 대하여(안 제3조)

-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 및 제공하는 정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업무 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가 있으며, 전자민원 창구, 인터넷 게시판 등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이용 편의증진 및 민원처리 서비스를 개선하여 고객에게 정보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외부운영인력에 대한 서비스 품질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1]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관리 현황(2011년 기준)

| 구분 | 관리대상 홈페이지 | 운영비(백만원) | 외부운영인력 |
|-----------|-----------------------|----------|--------|
| 홈페이지 관리대상 | 22개 (국문 19, 외국어 3) | 172 | 2명 |

3) 홈페이지의 정보관리에 대하여(안 제4조)

- 시민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보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정보관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4)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에 대하여(안 제7조)

-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여행사를 운영하고 행사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동 조항은 「공직선거법」에 비추어 무방하다고 판단됨.

5)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안 제8조)

-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기준에 의거하여 마일리지 부여하고 교통카드, 모바일서비스, 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됨.

※ ‘마일리지(Mileage) 제도’ 또는 ‘포인트 적립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일정률의 보너스점수를 주고, 누적된 점수가 일정수준이 되면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서비스로 고객 충성도(Loyalty: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지를 가진 상태)를 제고하는 유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IT 기술발달에 따라 그 활용도가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다만,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운영 현황(안 8조 관련)

(단위 : 명, 원)

| 구분 | 지급 단가 | 2007년 |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2011년 | |
|----------|--------------------------|-------------------|-------|-------|--------|-------|------------|--------|------------|-------|-----------|
| | | 신청자 | 집행액 | 신청자 | 집행액 | 신청자 | 집행액 | 신청자 | 집행액 | 신청자 | 집행액 |
| 대중교통 이용 |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 3 | 3,000 | 58 | 66,000 | 1,013 | 1,395,000 | 3,934 | 5,125,000 | 541 | 686,000 |
| |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 | | 1 | 5,000 | 101 | 509,000 | 365 | 1,825,000 | 33 | 165,000 |
| | 10,000원 이상 | | | | | 110 | 1,262,000 | 939 | 10,550,000 | 40 | 570,000 |
| 문자메시지 전송 | 20원 | 146 | 2,920 | 366 | 7,320 | 4,669 | 93,380 | 19,127 | 382,540 | 2,702 | 54,040 |
| 도서문화 상품권 | 10,000원 이상 30,000원 미만 | 2009년 6월부터 서비스 제공 | | | | 633 | 6,905,000 | 2,451 | 37,495,000 | 166 | 3,320,000 |
| | 30,000원 이상 60,000원 미만 | | | | | 8 | 285,000 | 233 | 7,895,000 | 33 | 1,200,000 |
| | 60,000원 이상 90,000원 미만 | | | | | | | 9 | 600,000 | 2 | 160,000 |
| 계 | | 149 | 5,920 | 425 | 78,320 | 6,534 | 10,449,380 | 27,058 | 63,872,540 | 3,517 | 6,155,040 |

6) 그 밖에 부칙에 대하여

- 부칙에서 동 조례안 시행 이전에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마일리지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판매수수료 요율은 ~ 범위내에서 정한다.”는 동 조례안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가.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나. 교육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1) 일 시 : 2011.2.23.(수), 제2차 교육위원회
- 2) 발의자 : 박재웅 부위원장
- 3) 수정내용 : 별첨
- 4)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재석의원 14,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2명)

다. 소수의견 요지(정상천 의원)

-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동 조례안 3.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해당 없다고 하였는데 동 조례안 제7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8조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등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함. 예산이 수반되지 못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 교육을 위한 기관인 교육청에서 마일리지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동 조례는 교육감이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따라서 동 조례안은 부결해야 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인터넷홈페이지운영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
|------|-----|
| 의안번호 | 232 |
|------|-----|

2011년 2월 23일
교육위원회

1. 수정이유

가. 동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홈페이지까지 모두 관리하게 하여 교육감에게 업무를 집중시킴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감의 업무 일부를 지역교육청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의 업무로 조정하고자 함.

나. 그 밖에 입법이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에”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로 수정함.(안 제2조제2호)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역교육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다.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2항, 제3항, 안 제4조제1항, 제2항,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라. 시행규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인터넷홈페이지운영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에”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로 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교육청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이”로, “인터넷서비스”를 “인터넷 서비스”로 한다.

안 제2조제6호 중 “수신 의사”를 “수신 동의 및 거부 의사”로 한다.

안 제2조제7호 중 “교육청에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로, “정책고객에게”를 삭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역교육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청의”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의”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교육감은”은 “기관장은”으로,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를 “효율적으로”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을 “담당부서를”로,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를 “있게 해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교육감은”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으로, “대한 정례적인”을 “대하여 연1회”로,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을 “우수기관에 혜택을”로 한다.

안 제5조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을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5조제5호 중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을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로 한다.

안 제5조제9호 중 “오류, 장난성의 글”을 “장난성의 글”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열린교육감실 나도교육감 운영”을 “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 운영”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열린교육행정”을 “열린 교육행정”으로, “열린교육감실 나도교육감”을 “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인터넷 커뮤니티”를 “인터넷 동호회”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교육정책 기여도 등 별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를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별표에 의거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교육감은”을 “기관장은”으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중에서 3번의 부여점수 “100점”을 “10점”으로,

4번의 부여점수 “100점”을 “10점”으로, 6번의 부여점수 “100점 이상 3000점 이하”를 “50점 이상 500점 이하”로 한다.

부칙 제2항 중 “판매수수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다.”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u>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직속기관에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u> 3. "이용자"란 <u>교육청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u>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정책고객"이란 PCRM(정책고객관계관리: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에 대한 <u>수신 의사</u>를 표시한 고객을 말한다. 7. "정책메일서비스"란 <u>교육청에서</u> 서울교육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u>정책고객에게</u>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p>제3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u>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u>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육청의</u> 주요정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전자민원 창구 운영 3. 시민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4. 국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홍보 및 정보교류 5. 그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보 <p>② <u>교육감은</u>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u>교육감은</u>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p> | <p>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원안과 같음) 2. ----- ----- <u>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u> ----- -----. 3. ---- <u>서울특별시교육청이</u> ---- <u>인터넷 서비스</u> -----. 4. (원안과 같음) 5. (원안과 같음) 6. ----- ----- <u>수신 동의 및 거부 의사</u>를 -----. 7. ----- <u>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u> ----- -----<삭제> ----- -----. <p>제3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u>서울특별시교육감, 지역교육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특별시교육청의</u> -----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4. (원안과 같음) 5. (원안과 같음) <p>② <u>기관장은</u> ----- -----.</p> <p>③ <u>기관장은</u> -----</p> |

1. 주요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교육정책 기여도 등 별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2. 모바일서비스
3. 도서문화상품권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

② (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의 부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기준에 따라 500점을 부여한다. 판매수수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인터넷 동호회 -----
4. (원안과 같음)

② 기관장은 -----
예산의 범위에서 -----.

③ 기관장은 -----

-----.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기관장은 -----
-----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별표에 의거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4. (원안과 같음)

② -----, -- 예산의 범위에서 -----.

③ 기관장은 -----
----- 운영에 필요한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② (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

-----.

<삭제>

| 구 분 | 대 상 | 부 여 점 수 |
|-------------------|--|-----------------------------------|
| 3. 개인정보 수정 | 홈페이지 개인 정보를 수정한 자 | <u>100점</u> |
| 4. 뉴스레터 열람 | 뉴스레터 열람자 | <u>100점</u> |
| 6.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 글·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한 자(게시물은 직접 교육정책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것) | <u>100점 이상</u> <u>3000점 이하</u> |

| 구 분 | 대 상 | 부 여 점 수 |
|------------------|--|---------------------------------|
| 3. 개인정보 수정 | 홈페이지 개인 정보를 수정한 자 | <u>10점</u> |
| 4. 뉴스레터 열람 | 뉴스레터 열람자 | <u>10점</u> |
| 6. 글·사진 및 동영상 게시 | 글·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한 자(게시물은 직접 교육정책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것) | <u>50점 이상</u> <u>500점 이하</u>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홈페이지(외국어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정책고객"이란 PCRM(정책고객관계관리: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서비스에 대한 수신 동의 및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고객을 말한다.
7. "정책메일서비스"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역교육청교육장, 직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전자민원 창구 운영
 3. 시민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4. 국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홍보 및 정보교류
 5. 그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보
- ② 기관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관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기관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기관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기관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9. 연습성, 장난성의 글
10. 그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 운영) 교육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도와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감실 나도 교육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기관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기관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또는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별표에 의거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카드
2. 모바일서비스
3. 도서문화상품권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기관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메일서비스 제공 및 설문조사) ① 교육감은 정책고객에게 교육정책 및 다양한 교육 정보를 메일서비스로 제공하여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한다.

② 정책메일서비스 발송은 수신 동의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의 부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기준에 따라 500점을 부여한다.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

| 구 분 | 대 상 | 부 여 점 수 | 부여 방법 |
|-------------------|---|----------------|---|
| 1. 회원 가입 | 홈페이지 회원 신규 가입자 | 500점 | 최초 가입 시 1회 |
| 2. 로그인 | 홈페이지 방문자 | 10점 | 1일 1회 |
| 3. 개인정보 수정 | 홈페이지 개인 정보를 수정한 자 | 10점 | 연 1회 |
| 4. 뉴스레터 열람 | 뉴스레터 열람자 | 10점 | 이메일에서 열람 때만 인정 |
| 5. 설문조사 참여 | 설문조사 참여자 | 100점 | 회당 1회 |
| 6.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 글·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한 자(게시물은 직접 교육 정책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것) | 50점 이상 500점 이하 |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 한다 |

주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